#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696

발의연월일: 2022. 7. 28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민형배 • 김성환

김철민 • 이용선 • 임오경

이성만 • 오영화 • 한병도

장철민 · 홍영표 · 양정숙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7월,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 존)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굴착기 기사가 「교통사고처리특례법」 위반(치사상)과 「도로교통법」 위반(사고 후 미조치) 혐의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.

현행법상 이른바 '민식이법' 규정(제5조의13)과 '도주치사죄' 규정(제5조의3제1항)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'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'에 한정하고 있음. 그런데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 17호가목에 따른 '차'의 종류에는 자동차, 건설기계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등이 열거되어 '건설기계'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'건설기계' 중 하나인 '굴착기'의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중처벌 대상

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)제3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이미 '차마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'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 현행법상 이른바'민식이법'규정(제5조의13)과 '도주치사죄'규정(제5조의3제1항)에서의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'차마또는 노면전차'로 확대・변경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3제1항 및제5조의13).

#### 법률 제 호

##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동차·원동기장치자전거"를 "차마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

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"를 "차마 또는 노면전차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) ①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처벌) ① ---------- 차마 또는 노면전차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「형 법」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(이하 "사고운전 자"라 한다)가 피해자를 구호 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. 1. • 2. (생 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자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차 마 또는 노면전차-----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)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 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 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 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 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이하 같다)에게 「교통사고처리	
특례법」 제3조제1항의 죄를 범	
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	
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